

—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9월 15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9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9월 19일

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심사보류

마. 재상정일자: 2001년 10월 22일

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현재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.

다. 주요내용

- 공공시설위탁시 사용·수익허가범위, 허가기간, 사용료, 납부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(제6조)
-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각시 절차 간소화(제8조)
 - ◆ 소액재산 규모 상향조정
 - 동지역(600⇒ 660㎡이하), 면지역(900⇒ 990㎡이하)

-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이상 _
까지로 지정된 사항을 1000분의 10이상에서 1000분의 50이상까지로
하여 탄력적 적용(제25조)
-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에 이전
하거나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%이상을 당해
지역내에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경우는 대부료와 사용
요율을 대폭인하(1000분의 50 ⇒ 1000분의 10이상)
-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 공유재산내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
산출기준 신설(제28조)
- 공유재산 임대시 전세금제도 도입됨에 전세금 납부방법 기준 마련
(제28조의2)
- 대부료 등에 연체료 징수시 사용료, 대부료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
납부시에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
않도록함(제31조)
-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추가(제31조)
-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 도입(제31조2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행정자치부 준칙을 토대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임
-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
으로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범위를 10% 확대하고 공유재산
대부료와 사용료 등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
임
- 상위법 저촉이나 타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